



VISION

생각키움 · 마음올림 ·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안내

송우통신

2021. 7. 6.

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 !!

1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제도 도입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제도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접수 즉시(사안 조사 이전) 가해학생은 학교 내 별도의 공간 혹은 가정 등에서 최대 3일간 피해자와 분리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게 한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즉시 분리 예외

- (제1호)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의사 확인서'에 따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제2호)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름

\* 즉시 분리 기간

- 최대 3일(72시간) 범위 내에 실시
  - 인지한 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교육활동 시작일로부터 3일  
ex) 토요일에 인지: 월, 화, 수
- 제16조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또는 제17조제4항(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관련)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즉시 분리'는 종료
- '즉시 분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등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b>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b> 하는 제도 ▶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 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과정 없이 <b>조기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의 회복을 도모</b> 합니다. (상담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b>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b>	

③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출석 또는 서면)할 수 있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출석 또는 서면)할 수 있음(제16조의2제2항)

단계	내용
전문가 의견 청취 안내	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측 ○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양식1) 발송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붙임) 발송 ※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서 제출 기한은 교육지원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학생 측 권리 최대 보장
↓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 제출	피해학생 측 → 심의위원회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확인서'(붙임) 서면제출
↓	↓
전문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 전문가 및 의견 청취 방식(출석 또는 서면) 결정 ○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2021. 7. 6.

송 우 초 등 학 교 장